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4. 14 선고 2021나5090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바로니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청

담당변호사 오성균, 조선란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4. 14.

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19가합12890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268,3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68,307,50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D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268,307,5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268,307,50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위 취소와 금원 지급 청구의 금액을 각 ‘268,307,503’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7쪽 아래에서 세 번째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11쪽 제14행의 ‘사해의사 역시’를 ‘사해의사는’으로 각 고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2020. 12.

1.'에서 '2022. 3. 15.'로 늦춘 것이다)를 반영하여 제1심 판결 제14쪽 제5행의 '이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부터 제10행의 '이루어져야 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 315,849,315원과 이에 대한 2019. 4. 17.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22. 3. 15.까지의 지연손해금 220,765,691원(= 315,849,315원 × (2년 + 333일/365일) × 연 24%, 원 미만 버림)의 합계 536,615,006원보다 많은 금액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60억 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36,615,006원 중 적은 금액인 536,615,006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제1심 판결 제14쪽 제12행의 '438,212,269원'을 '536,615,006원'으로, 같은 쪽 제14 내지 16행의 '219,606,134원', '219,606,135원', '219,606,134원', '219,606,135원'을 모두 '268,307,503원'으로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14쪽 제19 내지 21행을 삭제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가 2019. 4. 16.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J 부동산을 양도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D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체납액은 D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③ 피고들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들 신청에 의한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의 피보전채권의 지연손해금 확장 청구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위 제1의 나.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수정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진, 판사 송석봉, 판사 김형식

별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사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165.44㎡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56.2

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사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214.3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72.8

3.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311.2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105.7

4.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69.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159.6

5.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사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865.61㎡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294.1

6.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사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0.9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13.9

7.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원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860.96㎡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292.5

8.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원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0.9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13.9

9.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860.9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184.2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0.92㎡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1307.6㎡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307.6분의 13.9

